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3조제4호 중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를 “2이상(제8-19조의14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로 한다.

제8-19조의10제6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을 분리(정보 및 인사교류의 제한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된 경우는 제외 한다)

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

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지
는 임직원(그 배우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
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

가.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
어서 신용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제8-19조의10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1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별도의 체계에 따라 신용등급을 표시
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
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19조의11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항제2호가목의 서류”를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 서류”로
한다.

3.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
고서

제8-1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9조의13(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 ①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 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의1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③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이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 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 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9조의14(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 ① 발행인은 무보증사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상법」 상 주식회사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상법」 제4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권
- 3 영 제32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권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자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 략)</p> <p>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u>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u>의 <u>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u>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 9. (생 략)</p>	<p>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p> <p>-----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p> <p>-----</p> <p>-----.</p> <p>5. ~ 9. (현행과 같음)</p>
<p>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 ⑤ (생 략)</p> <p>⑥ 영 제324조의8제4항<u>제4호</u>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p>	<p>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제6호</u>-----</p>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

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
1.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을 분리(정보 및 인사교류의 제한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

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3.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4.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대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

<신 설>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그 배우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
가.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용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5. 제8-19조의13제3항을 위반

하여 별도의 체계에 따라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19조의11(신용평가서 등의 제출·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제1항제2호가목의 서류 :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4. ~ 5. (생략)

<신설>

제8-19조의11(신용평가서 등의 제출·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고서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 서류 : -----

4. ~ 5. (현행과 같음)

제8-19조의13(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 ①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③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는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19조의14(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 ① 발행인은 무보증 사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채권의 형태로 발행
되는 유동화증권 및 「상법」
상 주식회사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상법」 제4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
는 사채권

3. 영 제32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
관이 발행한 사채권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
른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
용평가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보
한다.